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- 846호

「주택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등록사업자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09조에 따라 신탁 계약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주택건설 실적 인정을 받는 반면, 분양 등 실제 업무를 하는 등록사업자인 위탁자는 주택건설 실적이 인정되지 않음,

이에 신탁방식 사업의 실질을 감안하여 위탁자도 주택건설 실적을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등록사업자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09조에 따라 신탁 계약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인 위탁자의 실질을 고려하여 주택건설 실적을 인정하도록 함(별표 1 제5호).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주택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
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
- 전자우편 : [my486jy@korea.kr](mailto:my486jy@korea.kr)
- 팩스 : 044-201-5529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「정보마당-법령정보/입법예고」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(☎ 044-201-3320, 333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